

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01.01]
(일부개정) 2025.11.27 조례 제283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인구정책담당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-970-896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청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1.26., 2024.5.30.>

-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청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수립·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.
 - 일자리·교육·주택·문화·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
 - 「[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](#)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[제3조제2호](#)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
 - 그 밖에 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
- “다자녀가정”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)을 말한다.
- “청년”이란 「[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](#)」 [제2조제1호](#)에 따른다. <신설 2025.11.27.>

제3조(군수의 책무) 산청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구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-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
- 필요 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
-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[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](#)」 [제6조제1항](#) 및 [제5항](#)에 따른 계획을 수립·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 것으로 본다. <단서 신설 2024.12.5.>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3.5.11>

-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
2. 결혼 · 임신 · 출산 · 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
3.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
4.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
5. 「[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](#)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
6.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[양성평등기본법](#)」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. <개정 2019.12.26., 2024.12.26.>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20.11.30., 2021.5.28., 2023.12.28., 2024.12.26.>
 1. 당연직 위원: 행정과장, 행복나눔과장, 경제기업과장, 지역발전과장, 건강관리과장, 농축산과장
 2. 위촉직 위원: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촉 해제)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
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- ③ 간사는 회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 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인구정책사업)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결혼 · 임신 · 출산 · 양육 지원
2. [법 제7조의2](#)에 따른 인구교육

3. [법 제30조의2](#)에 따른 인구의 날 홍보

4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
5.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·법인·단체·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삭제 <2020.3.18.>

제15조(지원 대상 및 기준)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24.12.5.>

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

2.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 후 다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

3.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

[본조신설 2020.3.18.]

제16조(지원 절차) 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지원금 지원 시까지 신청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제15조에 따른다. <개정 2021.4.21., 2024.12.5.>

② 관할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「[전자정부법](#)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등본·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관할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이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·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읍·면장은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4.21.>

⑤ 읍·면장 및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1.30.>

[본조신설 2020.3.18.]

제17조(지원중단 및 환수)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5.>

1.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

[본조신설 2020.3.18.]

제1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제15조에서 이동 <2020.3.18.>]

제19조(포상)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·시행에 기여한 군민, 공무원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[제16조에서 이동 <2020.3.18.>]

제20조(시행규칙) 삭제 <2021.11.26.>[제17조에서 이동 <2020.3.18.>]

부칙 <조례 제2386호, 2019.5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432호, 2019.12.26.> (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~ ④ (생·략)

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복지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⑥ ~ ②⑥ (생·략)

부칙 <조례 제2448호, 2020.3.1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499호, 2020.11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532호, 2021.4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544호, 2021.5.28.> (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(생·략)

②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경제전략과장, 도시교통과장, 보건증진과장”을 “경제교통과장, 지역발전과장, 건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③ ~ ①④ (생·략)

부칙 <조례 제2574호, 2021.11.26.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831호, 2025.11.27.>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

일괄다운로드

[별표 1]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

서식

[별지 제1호서식]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기업체 등 전입 직원 명단

[별지 제3호서식]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

[별표] <개정 2025. 11. 27.>

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(제15조 관련)

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															
1. 전입자 지원	○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20.1.1.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	○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- 전입자 1인당: 20만원 ※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지원																
2. 결혼 장려 지원	○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,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(단, 혼인 신고일 현재 관내 주민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신청가능) ○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	○ 결혼장려금 지급(총 400만원) (단, 첫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며, 지급 시기는 첫 해 지급일이 속한 월에 지급함) ※ 2020.1.1.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 ※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																
3. 기업체근로자 지원	○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20.1.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,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(공장등록된)의 근로자	○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- 근로자 1인당: 30만원 ※ 1회에 한하여 지원																
4.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	○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.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※ 동일 전입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함	<table><tr><th>지급기준</th><th>지급액(천원)</th></tr><tr><td>5명 이상 ~ 10명 미만</td><td>200</td></tr><tr><td>10명 이상 ~ 20명 미만</td><td>500</td></tr><tr><td>20명 이상 ~ 30명 미만</td><td>1,000</td></tr><tr><td>30명 이상 ~ 45명 미만</td><td>1,500</td></tr><tr><td>45명 이상 ~ 80명 미만</td><td>2,000</td></tr><tr><td>80명 이상 ~ 100명 미만</td><td>2,500</td></tr><tr><td>100명 이상</td><td>3,000</td></tr></table> ※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	지급기준	지급액(천원)	5명 이상 ~ 10명 미만	200	10명 이상 ~ 20명 미만	500	20명 이상 ~ 30명 미만	1,000	30명 이상 ~ 45명 미만	1,500	45명 이상 ~ 80명 미만	2,000	80명 이상 ~ 100명 미만	2,500	100명 이상	3,000
지급기준	지급액(천원)																	
5명 이상 ~ 10명 미만	200																	
10명 이상 ~ 20명 미만	500																	
20명 이상 ~ 30명 미만	1,000																	
30명 이상 ~ 45명 미만	1,500																	
45명 이상 ~ 80명 미만	2,000																	
80명 이상 ~ 100명 미만	2,500																	
100명 이상	3,000																	

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(제15조 관련)

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용
5. 초·중·고 전입학생 지원	○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20.1.1. 이후 부모 (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)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	○ 학업 장려금 지급 - 학생 1인당: 30만원 ※ 1회에 한하여 지원함 ※ 당해연도 초·중고 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사업(초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)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제외
6.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	○ 2자녀이상 세대의 만 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※ 부모(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)는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,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	○ 대학교 재학생 지원 - 학생 1인당: 학년별 1회 30만원 ※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
7.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	○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가. 지원대상 -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- 출산가정: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- 청년 단독 거주자 나. 소득기준 -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: 연소득 1억원 이하.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- 청년 단독 거주자 :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	○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. 군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㎡ 이하) 구입·신축·임차 대출잔액의 3%. 다만,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- 신혼부부: 최대 150만원 - 출산가정: 최대 300만원 - 청년 단독 거주자: 최대 150만원 나. 지원기간: 연 1회, 최대 6회 지원 ※ 주거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※ 신청기간 및 지원관련 상세사항은 공고시 결정
8.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	○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	○ 국가기술(전문)자격시험, 어학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- 1인당 연 20만원 한도 ※ 최대 5년 지원

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(제15조 관련)

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용
9. 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	○ 부모(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)와 함께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 소재 초·중·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비인가 학교, 학교밖 학생 등	○ 학생 등 학업 성장 지원 - 초등학생 등 1인당 20만원(연1회) - 중학생 등 1인당 30만원(연1회) - 고등학생 등 1인당 50만원(연1회) ※ 당해연도 초·중·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자 중 고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※ 최대 12회 지원